



학교안전공제 제도



안전한 학교, 행복한 경기교육,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합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제도

학교안전공제 제도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 피해,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실시해주는 제도

교육활동이란?

- 1 학교장 관리·감독 하에 행하는 학교 안팎 활동
- 2 학교장 인정 행사(대회)
- 3 등·하교, 현장체험, 직업체험, 직장 견학·현장실습, 기숙사 생활 등

+

학교장 관리·감독하의 질병이란?

- 1 학교급식, 가스 등의 중독
- 2 일사병
-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4 이물질과 접촉에 의한 피부염
- 5 외부 충격 및 부상의 직접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

보상·지원종류

구분	내용
공제급여	요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급 (간병료 및 그 부대비용 포함)
	장해급여 치료(요양) 종료 후 장해 가 남은 경우 지급
	간병급여 치료(요양) 후 의학적으로 상시·수시 간병 이 필요한 경우
	유족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 한 경우
	장례비
위로금	교육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 한 경우
보전비용	교직원과 교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심리상담 지원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공제(요양)급여 청구 제도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및 질병으로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

요양급여 청구 흐름도



요양급여 보상범위

건강보험 적용된 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
전액 지급	일부항목 지급 (세부내역서 제출 시 검토 가능)



세부내용

※ 세부적인 보상범위는 공제회 홈페이지(<https://www.ggssia.or.kr>) > 공제급여 > 보상범위 참조

구비서류

필수	그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1 공제급여청구서(온라인 서명시 생략가능)2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3 진료비 세부내역서4 주민등록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서(청구액 50만원 이상 시)•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MRI진단 : 의사소견서(정밀진단 필요 사유)• 보조기 : 전자로 작성된 거래명세서 등

경기도학교안전공제 보상심사위원회 심사청구 제도

심사청구 제도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견) 시 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심사청구 흐름도



구비서류

- 1 심사청구서
-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3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구비서류는 공제회 홈페이지(<https://www.ggssia.or.kr>) > 정보마당 > 서식자료 참조



구비서류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지원 및 구상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지원 · 구상(상환청구)

가해자가 피해자 치료비 부담 **합의 실패 시** 피해자가 부담한 치료비용을 **공제회**에서 **지원** 후 **가해자에게 구상(상환청구)**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 흐름도



학교폭력 피해보상 내용

-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보상범위: 심리상담 및 조연,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인정기간: 상담 및 치료 2년, 일시보호는 30일

구비서류(우편제출)

- 공통 : 학교폭력피해치료비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청구서는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https://www.schoolsafe.or.kr>)에서 작성 후 출력

• 보상 유형별

심리상담 및 조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리상담 및 조연 기관 진료비 납입확인서, 영수증 등 2 심리상담 심리평가 결과보고서, 상담일지, 진료기록지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2 진료비 세부내역서 3 진단서(청구액 50만원 이상 시)
일시보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책심의위원회의 요청서 사본 또는 학교장 긴급조치확인서 2 일시보호기관의 납입확인서, 영수증 등

상담·심리적 치료 등 지원

상담·심리적 치료 등 지원 제도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해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 가족의 범위: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상담·심리적 치료 청구 흐름도



상담·심리적 치료 지원 내용(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0조의 4항 참고)

- 지원가능 치료기관: 교육감 지정 기관에서 치료받은 경우 인정, 이외의 치료기관 인정 여부 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함
- 지원기간: 1년

구비서류(우편제출)

• 지원여부 신청 시

- ①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신청서
- ② 학교장 의견서
- ③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④ 의료기관 치료 시: 영수증, 진단서, 의무기록지
- ⑤ 심리치료기관 치료 시: 심리검사 결과보고서·상담기록지
- ⑥ 종합심리검사: 임상심리전문가의 검사결과보고서
- ⑦ 심리치료자 전문가자격증 및 치료계획서
- ⑧ 주민등록등본
- ⑨ 소견서(안전사고로 심리치료 받는다는 소견)

• 치료비 청구 시

- ① 치료비 청구서
- ② 영수증
- ③ 통장사본
- ④ 주민등록등본
- ⑤ 상담일지 및 결과서 등

※ 구비서류는 공제회 홈페이지(<https://www.ggssia.or.kr>) > 정보마당 > 서식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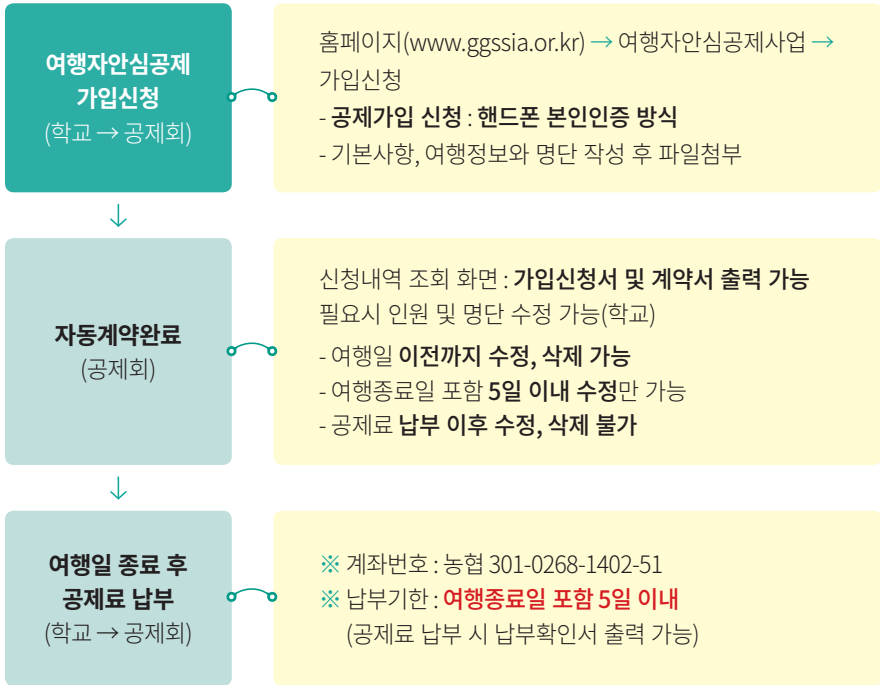
여행자안심공제 사업

여행자안심공제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제도

※ 학교 밖 교육활동: 체험학습, 수련활동, 생존수영, 직업체험, 문화체험 등

가입신청 흐름도



보상기준

- 계약 보장내용을 근거로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및 정액보상**
- 학교안전법 제34조에서 **보상되는 공제급여를 제외한 보상**
- ※ 보장범위, 구비서류 등은 공제회 홈페이지(<https://www.ggssia.or.kr>) > 여행자안심공제사업 > 사업안내 참조



학교안전공제회에 자주하는 질문(Q/A)

Q1 요양급여 청구시 치료비 전액이 보상되나요?

A1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지급하고, **비급여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 첨부 시 심사를 거쳐 일부항목을 지급합니다.**

Q2 실손의료(실비)보험과 중복 청구가 가능한가요?

A2 네. 가능합니다.

Q3 안경 파손 시 안경 구입비용은 보상되나요?

A3 안경 구입, 교체에 드는 비용은 보상이 안됩니다. 단, 수리비는 지급 가능합니다.

Q4 학교폭력치료비 청구서류는 우편으로만 제출해야 되나요?

A4 네. 구상권(상환청구) 행사 등에 필요하여 원본을 우편으로만 제출받고 있습니다.

Q5 학교폭력치료비 심리상담 치료비용은 근처 심리상담소에서 받아도 상관 없나요?

A5 아닙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심리상담 및 조언기관에서 발생한 상담비용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Q6 여행자안심공제는 현장체험시 모두 가입이 가능한가요?

A6 아닙니다. 학교장 승인이 되었더라도 **일반적인 업무활동(사전담사, 가족체험활동, 교직원 연수강의 등), 운동부훈련, 대회참가, 국외여행** 등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주 소 (11759) 경기도 의정부시 통일로 70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5층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대표전화 1588-5255 **팩스** 031-840-2127

홈페이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https://www.ggssia.or.kr>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http://www.schoolsafe.or.kr>
(해당 사이트에서 학교안전사고통지, 공제급여청구, 학교폭력
치료비 청구, 학부모 전자서명 등 시행)